
2022 금융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요령

2022.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금융의 날 포상 개요	1
II. 부문별 추천 기준	2
1. 저축·투자부문 포상대상	2
2. 혁신금융부문 포상대상	4
3. 포용금융부문 포상대상	5
III. 정부포상 기준	6
IV. 신청방법	10
붙임. 정부포상 추천서류 양식	12

I. 금융의 날 포상 개요 (금융발전유공)

1. 포상배경

- 법정 기념일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금융의 날'을 기념하여 금융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을 수여
 - '금융의 날'은 '64년부터 이어온 '저축의 날'을 확대·개편한 기념일로 '16년 제 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 7회를 맞이함
- '금융의 날' 기념식 및 포상을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2. 포상종류

- 저축·투자부문, 혁신금융부문, 포용금융부문으로 나누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금융위원장표창 수여
 - * 올해 구체적인 포상규모는 추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21년도: 훈장 2개, 포장 5개, 대통령표창 18개, 국무총리표창 27개, 금융위원장표창 124개)

3. 주요 일정

- 신청·접수기간 : '22.4.11.(월) ~ 6.10.(금)
- 포상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 8~9월
- 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 포상일시 : '22.10.25(화)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

II. 부문별 추천기준(저축·투자, 혁신금융, 포용금융)

1. 저축·투자 부문

일반인

- 근검·절약·저축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주위에 저축을 적극 권장하는 등 저축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저축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저축문화 및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캠페인, 금융교육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저축 및 투자로 얻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등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자

학생(초·중·고등학생에 한함)

- 평소에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한 생활태도로 저축액을 스스로 마련하고 저축활동을 생활화한 학생
-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활동을 통해 주변 학우에게 건전한 금융인식 확산에 기여한 학생

학교·교사* 및 저축·투자 업무 관련 공무원(군인 등 포함)

* 초·중·고등학교 및 그 교사에 한함

- 금융교육 및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 및 신용관리 관련 교육에 공이 있는 교사 및 학교

- 저축·투자 유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제도개선·홍보 활동으로 저축증대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공식적으로 관련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저축 및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홍보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금융기관 직원

- 저축상품 영업, 새로운 저축상품 개발, 획기적인 마케팅 등으로 저축증대 실적이 뛰어나거나 저축정신의 확산에 공이 큰 자
- 저축문화 확산에 공이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저축습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자
-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축·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

□ 금융의 국민소득 증대 기능 제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ISA, 펀드, 투자자문업 등 국민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2. 혁신금융 부문

- 혁신적 기술 아이디어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 자 또는 단체
 - 혁신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기술·지적재산권, 동산 등을 활용한 여신평가체계 쇄신 등 금융의 생산적인 자금증개기능 강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금융산업의 발전 및 경쟁촉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오픈뱅킹 서비스, 마이데이터 산업, 금융분야 빅데이터 도입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금융산업내 혁신적 도전자 출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을 위해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금융부문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정책 제언을 통해 금융부문 안정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금융분야의 미시적·거시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금융기관·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주주총회 활성화 등 기관·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시중자금의 녹색(친환경) 투자 및 탄소중립 이행 촉진 또는 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확산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다양한 ESG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ESG 공시·투자 촉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3. 포용금융 부문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서민금융 정책 마련 및 현장 실무를 통해 서민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서민금융 분야에 재직한 자로서, 서민금융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수법사례 확산 등 정부 정책에 기여한 자
 -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여 서민층의 실질적인 금융 자활을 도운 서민금융 유관기관·금융회사 등의 현장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 서민금융 정책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유관기관
- 금융 소비자보호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불법 사금융 근절에 기여하거나,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에 힘쓴 유관기관 실무자 또는 담당 공무원
- 금융권의 사회적책임 강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사회적금융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 지원에 기여하거나,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확대 및 노후자산 축적 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III. 정부포상 기준

□ 일반기준

- 추천대상은 금융발전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감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국민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추천할 것
- 공적사항은 실적뿐만 아니라, 노력과 창의에 의한 주위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감안할 것
- 실적은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환경 및 노력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 사회 각계각층에서 빨굴·추천하되 직업별·지역별·성별 균형을 유지할 것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3년(개인)·2년(단체) 이상 공적이 있을 것

□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은 3년, 금융위원장 표창은 2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다음페이지 세부기준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

❖ 포상 추천 제외 세부 기준 ❖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2) 형사처분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이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의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

- 금융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자는 아래표의 기간동안 표창을 제한

< 징계 유형별 포상제한 기간 >

구분	개인(임원)	개인(직원)	기관	제한기간
중징계	해임권고	면직	허가취소	4년
	직무정지	정직	업무정지	3년
	문책적경고	감봉	시정명령 기관경고	2년
경징계	주의적경고	견책	기관주의	1년
	주의	주의/경고		

IV. 신청 방법 (기관추천, 국민추천)

※ 신청시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김민들레 주무관(02-2100-2856) 또는
김수아 사무관(02-2100-2906)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1. 기관추천

제출서류*

* 반드시 붙임(12~16페이지)의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기관 자체적인 공적조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붙임1] 추천 기관별 총괄표

② 포상후보자 관련서류 (아래 표)

구분	제출서류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붙임2] 공적조서 1부- [붙임3] 공적요약서 1부- [붙임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공적 증빙 자료 <p>※ 포상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군인 등 포함) :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추가</p>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붙임2] 공적조서 1부- [붙임3] 공적요약서 1부- [붙임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공적 증빙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문,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원본 제출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원칙

* 전자문서 발송 가능기관은 방문·우편접수와 함께 온라인 공문발송도 필수

1. 공문제목 : “**2022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

2. 첨부파일

- ① 후보자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묶은 뒤 첨부
(파일명 : “[부문명]후보자 이름.pdf” * (예) [혁신금융]홍길동.pdf)
- ② [붙임1] 추천 기관별 총괄표

주 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김민들레 주무관 또는 김수아 사무관

2. 국민추천

※ **국민추천제** : 금융발전에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기관 외에도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 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
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단체 자체추천은 불가능)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국민추천에 한하여 이메일접수도 가능 함. 이메일 제출 시 '국민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
(김민들레 주무관(kmdl83@korea.kr))

주 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김민들레 주무관 또는 김수아 사무관

제출서류* (원본) : ① [붙임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② [붙임5] 국민추천서 1부
③ 공적 증빙 자료

* **반드시 붙임 (16~17페이지)의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추천 기관별 총괄표

1. 후보자 소속 기관명 : _____

* 금융기관이 "저축·투자부문 일반인"을 추천한 경우 소속기관 :
추천한 지점·조합 등을 기재

2. 추천 담당자 성명·직위 : _____

3. 추천 담당자 연락처(회사) : _____

4. 추천 담당자 이메일 : _____

5. 추천한 포상후보자 총괄표

연번	부문	소속	직위	성명	수공기간	포상·징계	포상 개인	후보자 연락처*
1	예) 혁신금융							
2								
3								

* 포상대상자 선정시 행사일정 등 안내 목적

※ [필수] 기관별 추천 담당자는 정부포상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다음의 파일·정보를 꼭 보관·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 ❶ 포상후보자의 개인/직장 연락처
- ❷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한글/워드본 ("공적내용" 텍스트 복사가 가능한 파일)
- ❸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등 관련파일 pdf본(스캔본)

[불임 2]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군번(군인인 경우)	
	추천자 조회를 위해 중요하므로 반드시 13자리 모두 기재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직업	소속	법적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분야	저축·투자, 혁신금융, 포용금융 중 1개 부문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 “금융발전(○○부문)”	공적기간	○년○월로 기재 (예)7년 5월 (추천일기준 해당분야 공적기간)
<p>공적 요지 (60~75자(130~150byte)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자 원칙에 따라 정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으로 표시</p>			
조사자 : 추천 담당부서장 또는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	조사자 소속 기관장	직위	성명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관인</div>			

210mm×297mm[백상지 80g/m²]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상별 내용 상세 기재하되,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시]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금용위원회표창은 반드시 기재]
공적 내용	
<p>○ 공적내용은 6자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 · 계량적 · 객관적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p>○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띄어쓰기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 	

[불임 3]

공적요약서

소속			직급(직위)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만 세)	
	(한자)				
재직기간	년	월	[포상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수공기간	년	월	[관련 유공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		
주요근무 경력	-				
과거포상경력 (장관표창이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금융위원장 표창 반드시 기재]	훈격	수여일자	징계·형벌 [해당사항 반드시 기재]	종류	일자
<p>※ 200자 내외로 핵심 공적사항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재하되 우수제안, 특별공적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p>					
<p>(중고딕 13포인트,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p>					
작성자 (인사담당자)			확인자 (인사담당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불임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식위 심사 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불임 5]

「금융발전 유공(00*분야)」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서

* 저축·투자, 혁신금융, 포용금융 중 한가지 작성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현	(~)	
공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내용은 6자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계량적·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서 유의사항 》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달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천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